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본회의 안건의 사전 공표〉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65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소영 · 복기왕 · 권향엽 · 김문수 · 윤건영 · 정혜경
허종식 · 김한규 · 전용기 · 윤종오 · 신장식 · 천하람
한정애 · 이용선 · 박지혜 · 허성무 · 조인철 · 박해철
김영환 · 박지원 · 김성희 · 박선원 · 서삼석 · 김재섭
안태준 · 박용갑 · 이광희 · 장종태 · 김 윤 의원
(29인)

2. 제 안 일 : 2025. 2. 14.

3. 회 부 일 : 2025. 2. 17.

※ 의안번호 : 816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회기 중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 등을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 및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라고 되어 있을 뿐,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목록 등을 작성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공표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

를안을 사전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있지 않고 있음.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본회의는 총 20회인데, 안건의 목록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통지된 시점은 평균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임. 심지어 본회의 개의 21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거나(2024년 7월 3일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의 개수가 29개인데 본회의 2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5년 1월 8일 본회의), 총 83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본회의 개의 2시간 4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2분 남짓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4년 9월 26일 본회의) 등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게 될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 입장 전에 법안의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빈번하였음.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일정을 공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제93조의2 개정).

Ⅲ. 검토의견

1. 법률안 본회의 상정 1일 전 통지·공표 의무화(안 제76조의3 신설)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사일정을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다만,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6조의3(본회의 안건의 사전공표) 의장은 제76조에 의한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다만,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은 의장이 본회의 개의시간과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한 의사일정은 지체 없이 통지·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 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당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달리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의장이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있음. 이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최종적으로 작성함.

작성된 의사일정의 통지와 관련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까지는 의사일정을 본회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²⁾, 본회의가 며칠간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시 이를 삭제하고, 의장으로 하여금 작성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음³⁾.

현재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작성되는 즉시 팩스를 이용하여 모든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국회홈페이지에 게시⁴⁾하여 공표하고 있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2) 「국회법」(2005.7.28. 법률 제7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②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3)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p.372~373

4) 당일 의사일정: 국회홈페이지(<https://www.assembly.go.kr/>)>국회활동>국회회의>국회일정

회기 전체 의사일정: 국회홈페이지(<https://www.assembly.go.kr/>)>국회활동>국회회의>의사일정 공지

[표-2] 당일 의사일정(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 포함) 예시

의 사 일 정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3월 13일(목) 오후 2시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하 생략)…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제22대국회 개원 후 2025년 7월 7일 현재까지 법률안을 상정한 총 27회의 본회의를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이 본회의 개의일에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한 당일 의사일정이 통지되었고, 본회의 개의 21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된 경우도 있었음⁵⁾.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한 의사일정의 경우에는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통지·공표하도록 하되,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려는 것으로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한 당일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5) 2024년 7월 3일, 15시 개의 예정 본회의에 대한 당일 의사일정이 14시 39분에 통지·공표되었음.

통지·공표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사전에 숙지·검토하기 어려운 문제를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개의 전에 심의대상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의사일정 통지·공표의 지연은 사실상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른 의사일정 작성 지연에 기인한다는 점, 개정안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 중 법률안에 대하여만 사전 통지·공표하고 그 밖의 안건에 대하여는 최종적인 의사일정을 추후 확정하여 통지·공표하게 되면 의사일정의 추가·변경으로 인한 혼란⁶⁾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개정취지 및 기대효과와 더불어 국회 운영상 관례⁷⁾, 의사 일정의 잦은 변동·추가에 따른 비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6)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법률안 이외에도 인사안건(선출안·추천안), 결의안, 동의안, 승인안, 예·결산 등의 안건을 비롯하여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등 다양한 의사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중 법률안만을 사전에 먼저 공표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일정을 추가로 공지할 경우 잦은 의사일정의 추가·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7)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태(본회의 부의안건)가 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심사보고 또는 대안(위원회안) 제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본회의 예정일 1일 전에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본회의 1일전에 의사일정(법률안) 작성 및 공표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종료→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가 그 보다 앞서 완료되어야 함.

2. 위원회의 심사보고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요건 강화(안 제76조의3 신설)

개정안은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의장이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한 경우에 그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임(제93조의2 단서).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u>특별한</u>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 ----- ----- ----- ----- ----- <u>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u> ----- ----- -----.

현행법은 위원회로부터 의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심의에 앞서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일정의 사전 확정으로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처리가 시급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신축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임⁸⁾.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적용 예외의 요건을 현행의 ‘특별한 사유’에서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취지는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시기 제한의 적용 예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본회의 상정 법률안에 대한 의원의 사전 준비시간 확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함.

다만, 개정안은 그 문언에 “안보·경제 등”으로 추가적인 사유의 적용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특정한 사정이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2025년 7월 7일 현재 기준 제22대국회 기간 중 현행법 제93

8)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472

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보고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법률안은 18건으로, 아래와 같음.

[표-4] 위원회 심사보고 당일 본회의 상정 법률안 사례(제22대국회)

회 기	본회의 상정일	의안명
제417회국회(임시회)	2024.08.28	간호법안(대안)
제423회국회(임시회)	2025.03.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6회국회(임시회)	2025.07.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급식기본법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 의 처
02)6788-5014